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87
----------	-----

제안년월일 : 2018년 12월 19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경만선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호)과 정진철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2호)과 추승우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4호)과 경만선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0호)을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2018. 12. 19.)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4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4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사유

-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4건의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및 정비위탁 개선,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음  
따라서, 4건의 개정조례안과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 일부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8호)
- 나.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일반인과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장치를 마련함 (안 제3조제3항)
- 다.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시장이 적극적인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 라. 시장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근거 및 설치·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의2)
- 마. 서울시 공공자전거 사업 관련 인근 영세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게 경정비의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자전거 고장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경정비 업무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게 함.(안 제12조의2제3항)
- 바.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12조의3)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장비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에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 중 자전거 고장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경정비 업무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중 15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 별 할인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8.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시장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서울특별시시장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장비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②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등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제12조의2(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등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p>&lt;신 설&gt;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 중 자전거 고장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경정비 업무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lt;신 설&gt; 제12조의3(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중 15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li> <li>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li> <li>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6.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li> </ol> <p>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 별 할인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